

「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」 입안계획서

1. 제명

- 「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」(관세청 고시 제2026-18호, 2026.3.31.)

2. 개정 사유

- 「자율심사」 운영 등에 관해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세부절차 마련
- 온라인 관세조사의 운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해 납세자의 관세조사 수감 편의성 제고
-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
 - 관세법 개정사항(관세조사 사전통지 기간 합리화) 반영 등

3. 주요 개정내용

- 자율심사 신청 기업 대상 ‘자율심사 제도’ 시행 (§2, §60의2, §60의3, §60의4, §60의5, §60의6, §60의7, §60의8)
 - 기업*의 신청을 받아 세관장이 자율심사업체로 승인하고, 자율심사업체는 2년 단위로 납부세액의 적정성 등을 자체점검한 후 관세사의 검증·확인을 받아 세관장에게 자율심사 결과보고서 제출
 - * 최근 2년 연평균 수입액을 기준으로 관세청장이 기준을 공고할 예정
 - 자율심사 결과 확정된 세액에 대하여 정기 관세조사 원칙적으로 면제*
 - * 거짓, 부정한 자료 제출, 납세협력의무 불성실 이행 등 예외 존재
 - 관세청 ‘자율심사 심의위원회’를 통해 자율심사업체 승인·취소 및 자율심사 결과 평가 등 심의

□ 온라인 관세조사 운영 근거 명확화(§2)

- 서면 관세조사의 범위에 화상회의시스템을 활용한 비대면 조사 방식이 포함됨을 명확하게 표현

□ 관세조사 사전통지 기간 합리화(§54①, , 별지11, 별지11호의2)

-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에 조사 대상, 조사 사유 등을 사전통지하였으나, 20일 전에 사전통지하도록 변경 관세법 개정사항 반영
- 사전통지 없이 조사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개시하는 날에 사전 통지를 하지 않은 사유를 서면 교부

□ 기타 오탈자 수정

4. 제정·개정 조문별 법령 위임 근거

조문번호	법령위임근거 조항
○ 제2조, 제60조의2, 제60조의3, 제60조의4, 제60조의5, 제60조의6, 제60조의7, 제60조의8	○ 관세법 제38조, 관세법시행령 제32조의2
○ 제2조, 제54조	○ 관세법 제114조, 관세법시행령 제139조
○ 제89조	○ 관세법 제106조의2, 관세법시행령 제124조의2

5. 입안내용이 반영된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: “붙임”

6. 시행 일자 : 2026. 0. 0.

7. 의견제출 방법

- 제 출 처 : 관세청 심사정책과
- 담 당 자 : 문경환사무관(042-481-7812), 이은정주무관(042-481-7863)
- 제출기한 : 2026. 10. 26.
- 제출방법 : (이메일) 010896lej@korea.kr
(우편) 35208,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
관세청 심사정책과